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주 택 법 일 부 개 정 법 률 공 포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67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게 대행 시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3호 중 “자”를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10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